

2 장학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14장에 의거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장학관리는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장 학 위 원 회

제 3 조 (목적)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1, 2012. 11. 1, 2015. 5. 1)

제 5 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

1.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액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4.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장학금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조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나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의2 (장학사정관제) ①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과 상담 및 면학지원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 (신설 2012. 11. 1)

- ② 장학사정관은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 ③ 장학사정관은 교내외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

제 3 장 장 학 금 지 급

제 7 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생중 학업성적 우수자
3.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4. 본교 교직원 직계자녀
5. 본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직계자녀
6. 국가유공자 등 법률규정에 명시된 자
7. 근로, 봉사 및 간부학생 (개정 2012. 11. 1)
8. 국가와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및 직계자녀
9. 공무원 채용후보자(5급 이상) 및 각 학과·학부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10. 신앙심이篤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1. 산학협동 공로자 및 직계자녀
12.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
13.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14. 체육특기자로서 전국규모대회에서 수상한 자 (개정 2012. 11. 1)
15. 기타 학생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 11. 1)
16.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2. 11. 1)

제 8조 (장학금)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 2015. 3. 2, 2016. 3. 2, 2017. 3. 1, 2018. 3. 1, **2019. 3. 1**)

1. ~ 14. <삭제 2012. 11. 1>

제 8조의 2 (기타장학)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

제 8조의 3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1. 1)

제 9조 (지급정지 및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퇴 및 제적된 자
2. 직전학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학칙을 위배한 학생 또는 학사경고자
4. <삭제 2012. 11. 1>
5.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단, 총장장학금은 제외) (개정 2012. 11. 1)
6. <삭제 2012. 11. 1>
7. 학칙에 따른 이수학기 초과자(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개정 2012. 11. 1)
8.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달성에 희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였을 때
9.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기준 성적 미달시(별표기준) (신설 2012. 11. 1, 개정 2013. 10. 1)

제10조 (장학금지급원칙) 장학금 지급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간 : 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로 한다.
2. 지급액 :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3. <삭제 2012. 11. 1>
4. 지급한도 : 장학금의 지급한도는 등록금 범위 내로 한다. 단, 자격증취득, 대회수상, 해외연수 지원, 생활비보조, 교육훈련지원, 연수체재비지원, 봉사(근로), 글로벌리더장학, 기숙사장학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3. 1, 2012. 11. 1)

5.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은 감면 또는 은행 계좌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6. <삭제 2012. 11. 1>
7.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교내 타 성적장학과 이중수혜 불가하며, 상위장학(수혜금액 상위)만 수혜가능하고, 연속장학 횟수에 포함된다. 단, 재직자전형장학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1. 1, 개정 2013. 10. 1, 2016. 3. 2)
8. 총장 A장학금 추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총장 B장학금 추천 배정인원 1명 추가 배정 한다. (신설 2015. 3. 2)
9. 동점자 처리 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3. 2)

부 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

이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신입생 장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 3. 1)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

이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6. 3. 2, 2017. 3. 1, 2019. 3. 1)

신 · 편입성장학

구분	입시전형	선발요건	인원	장학금액	지급기간
총장 I 장학	수시·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 합이 6등급 이내인 자 ·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 총 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 · 도서비 · 연간160만원 · 생활관비 	4년
총장 II 장학	수시·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 합이 8등급 이내인 자(모집단위 입학정원 10%이내) ·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 총 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50% · 도서비 · 연간80만원 · 생활관비 	4년
지역 우수 인재 장학 I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교(충청, 대전, 세종) 출신자로서 우리 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등급 1.00~1.99인(단, 국영수 합 55시수 이상) · 적용 전형 : 학생부, 면접, 지역학생, 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검정고시 제외) ·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 총 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 · 도서비 · 연간80만원 	4년
지역 우수 인재 장학 II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교(충청, 대전, 세종) 출신자로서 우리 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등급 2.00~2.49인(단, 국영수 합 55시수 이상) · 적용 전형 : 학생부, 면접, 지역학생, 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농어촌전형(검정고시 제외) ·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 총 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50% 	4년

구분	입시전형	선발요건	인원	장학금액	지급 기간
수시 수석 장학	수시	· 모집단위별(학부,학과)수석 · 적용 전형 : 학생부, 면접, 지역인재, 실기(검정고시 제외) · 평균 평점 3.0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성적 미달시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 수업료 50%	1년
수시 우수 장학	수시	· 모집단위별(학부,학과) 상위 10%이내인 자 · 적용 전형 : 학생부, 면접, 지역인재, 실기, 호서인재(검정고시 제외)	해당자	· 수업료 50%	1학기
정시 수석 장학	정시	· 모집단위별(학부,학과)수석 · 적용 전형 : 수능, 면접, 실기 · 평균 평점 3.0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성적 미달시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 수업료 50%	1년
정시 우수 장학	정시	· 모집단위별(학부,학과) 상위 10%이내인 자 · 적용 전형 : 수능, 면접, 실기	해당자	· 수업료 50%	1학기
체육 특기자 장학	수시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전공별 수석 · 평균 평점 3.0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성적 미달시 장학금 지급 종료	해당자	· 수업료 50%	1년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전공별 차석		· 수업료 50%	1학기
편입생 장학	편입학	1. 우수편입생 : 단과대학별 입학성적 상위 20% 이내인 자 (단, 최초합격자 기준 상위 20% 이내 선발) (2020년 1학기부로 삭제) 2. 협약기관편입생 : 대학부설기관, 협약체결기관에서 편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 성적 미달시 장학금 지급 종료 3. 편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자 (단, 다른 편입학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해당자	일정금액	1년
			해당자	100만원	1회
재외 국민 장학	수시·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자	해당자	· 입학금 감면 · 장학장학금1회	1회
				· 생활관비	4년
서해 5도 장학	수시·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자	해당자	· 입학금 감면 · 장학장학금1회	1회
				· 생활관비	4년

재학생장학

구분	선발요건	장학금액	지급기간
총장장학	1. 총장A : 직전 학기 성적 4.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2. 총장B : 직전 학기 성적 3.5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3. 총장C : 직전 학기 성적 3.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4. 총장면학 : 직전 학기 성적 3.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 배정 인원 : 직전 학기 각 학부 및 학과(전공)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단, 편제 개편 또는 모집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정이 불가한 학과의 경우 유사학과(전신학과)와 통합하여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 등 트랙으로 모집하는 학부의 경우 트랙별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인자 지급 불가	1.수업료 전액 2.수업료 50% 3.수업료 30% 4.수업료 20%	1학기
특별장학	1.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 2. 경제적 어려운 자로서 품행이 바르다고 인정되는 자 3. 관장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4. 기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일정금액	일정기간
봉사장학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 및 봉사한 자 · 근로, 멘토, RE:born학습(선후배사랑학습공동체), 튜터, 어깨동무, 채플봉사, SNS홍보단, 대학홍보단, 기타봉사 등	일정금액	1학기
글로벌 리더 장학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 2.5이상인 자	일정금액	1학기
교직원 장학	재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포함하여 2인까지로 하며 평점 2.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4년
체육우수 장학	체육특기자로서 아래 지급방식에 따른다. 1. 1등급 :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우승 입상 2. 2등급 :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2위 입상 3. 3등급 :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3위 입상 단, 전국규모대회의 정의 및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수업료 전액 2.수업료 2/3 3.수업료 2/3	1. 1년 2. 1년 3. 1학기
소망장학	가정경제가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기타가계곤란자 등	일정금액	1학기
국가 유공자 장학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 보호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라 직전 학기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전액(본인) 등록금반액(자녀)	4년
희망장학	장애인복지법 29조에 의거 장애등급 1급, 2급, 3급 등록증 소지자	일정금액	1학기
가족장학	본교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직계가족 2명 이상 재학 중일 경우 학부과정 학생 1인에게 지급	일정금액	1학기

구분	선발요건	장학금액	지급 기간
학군단 장학	학군단(R.O.T.C) 학생 중 우수한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학군단에 서 따로 정함	일정금액	1학기
벤처 프런티어 장학	재학생 중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 ·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5인 경우 계속 지급 (2학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미달시 장학금 지급 종료단, 벤 처프런티어위원회에서 구제될 경우 예외	· 등록금 전액 · 생활관비 · 해외연수비1회	4년
국가고시 장학	국가고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일정금액	일정기 간
학과 장학	학과에 배정된 장학 예산에 대해 성적 우수, 저소득층, 근로, 기타 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따로 정함	일정금액	1학기
한마음 장학	가정경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학업 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학생생활상담소 운영위원회, 교목실 또는 장학사정관이 추천한 자	일정금액	1학기
기숙사 장학	입학우수자 및 벤처프런티어 전형으로 선발된 자	일정금액	1학기
외국인 유학생장학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일정금액	1학기
북한이탈 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직전 학기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 반액	4년
국제화 장학	해외연수자(어학연수, 교환학생), 어학프로그램 참가자와 해외봉사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부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일정금액	1학기
재입학장학	본교 재입학한 자	입학금 전액	1학기
취업준비 장학	취업 준비 목적으로 졸업을 연기한 자(학기초과자)	일정금액	1학기
재직자전형 장학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50%	4년
실습조교 장학	실습조교로 선발된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 함	일정금액	1학기
연구조교 장학	연구조교로 선발된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 함	일정금액	1학기
현장실습 장학	현장실습에 선발된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 함	일정금액	1학기
기타 장학	부서에 배정된 장학 예산에 대해 성적 우수, 저소득층, 근로, 기타 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일정금액	1학기
산학융합 캠퍼스장학	· 산학융합캠퍼스 해당 학과 대상 · 성적 우수, 저소득층, 근로, 기타 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함	-	-